

의안번호	제 85 호
의 결 연 월 일	2010년 12월 일 (제296회)

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김종필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0년 11월 30일

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종필의원 대표발의)

발의연월일 : 2010년 11월 30일

발 의 자 : 김종필 · 김봉희 · 정 현 · 김희수 ·
윤성옥 · 박문희 · 황규철 의원(7명)

의안 번호	85
----------	----

1. 제안 이유

- 우리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
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(안 제8조)

3. 조례안 : 불 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불 임

5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미래산업과와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22 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**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경제투자본부장”을 “경제통상국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자

제8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8조제6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남은 임기”를 “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구성 및 운영) ① (생략)	제8조(구성 및 운영) ①(현행과 같음)
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경제투자본부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주관기관의 공동장비사업 총괄책임자로 한다.	② ----- 경제통상국장----- ----- -----.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내 장비 보유기관의 실무 책임자가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도의회에서 추천한 자</u>	2. <u>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자</u>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	⑤ ----- -----.
1. ~ 2. (생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3.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⑥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	3.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----- 해당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남은 기간 ----- -----.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